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 - 4호

『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수돗물 수질기준은 점차 강화 되어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음용률은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
- 나. 우리 시 미추홀 참물의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 등이 함께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시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천광역시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1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4일(일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4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득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41조의2(음용률 향상과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

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

□ 수도법

제33조 (위생상의 조치)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,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(이하 "소독등위생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[대통령령으로 정하는](#)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([「주택법」 제2조](#)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[법 제55조](#)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. 이하 제4항과 [제36조제1항](#)에서 같다)는 급수설비(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수도법 시행령

제50조(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)[법 제33조제2항](#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.

1.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(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)인 건축물 또는 시설
2. [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](#)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
3. [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](#)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

□ 주택법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3.20>

2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·복도·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제55조 (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) ①주택관리업자·임주자대표회의(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임대사업자([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4호](#)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)는 [대통령령이 정하는](#) 바에 따라 [제56조](#)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(이하 "주택관리사등"이라 한다)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23>

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임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. <개정 2009.2.3>

1. 임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
 - 가. 공동주택의 운영·관리·유지·보수·교체·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
 - 나.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·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·수령·지출 업무
2. 장기수선계획의 조정,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. 다만,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
3.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[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](#) 업무
-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3>
-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[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9.2.3>